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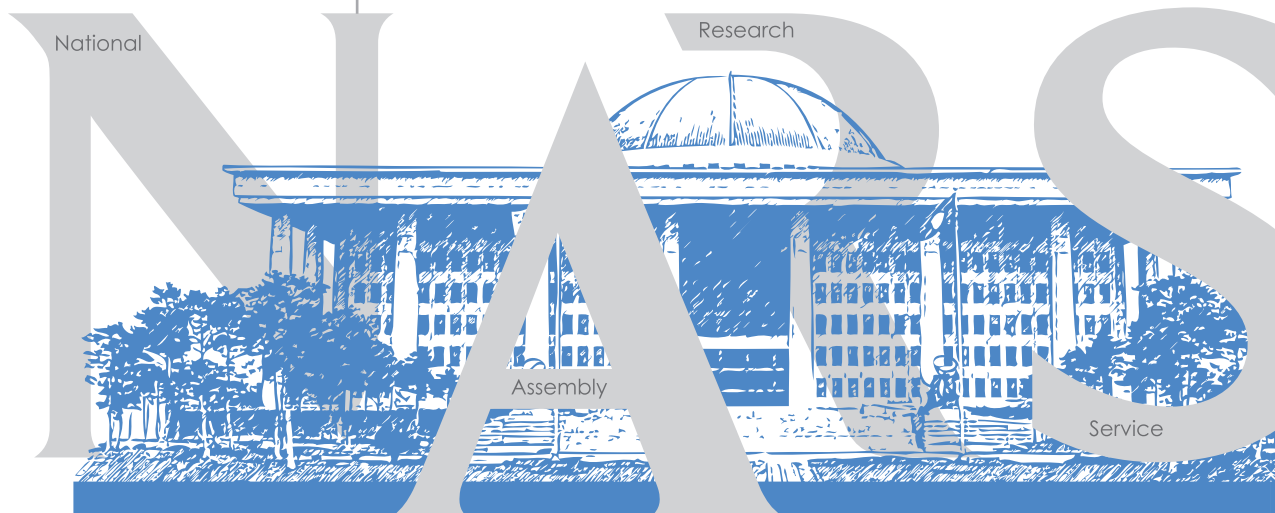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입법·정책보고서

2020. 12.

제69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신용우(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2020. 12. 31.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정책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0. 12. 31.)되었습니다.

요 약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의 각 측면에서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측면에서 개인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할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 「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블록체인·가상자산과 같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률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 권리는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위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정보은행 사업모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안전성 확보, 데이터 가치 산정 및 거래 방법, 환원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활발한 유통·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전제된다.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기존의 경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데이터 이용과 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측면에서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를 제3자가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에 저작물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민간데이터 개방에 있어 기업의 소유권 및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 독점 현황 및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파악하고, 경쟁법 또는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면에서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정비 차원에서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 경우 기존에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처·기관과의 관계, 설립 형태, 역할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 기반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거래소와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을 확대하고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거래·분석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주체에게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한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례

□ 요약

I. 들어가며 / 1

II. 개인 측면의 주요 쟁점 / 7

1.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7
가. 논의의 필요성	7
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	8
(1) 개요	8
(2) 국내 현황	9
(3) 해외 현황	11
(4) 대응 방안	12
다.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13
(1) 개요	13
(2) 국내 현황	14
(3) 해외 현황	16
(4) 대응 방안	18
라. 정보은행 사례	19
(1) 개요	19
(2) 국내 현황	20
(3) 해외 현황	20
(4) 대응 방안	22
마. 소결	23

2.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24
가. 논의의 필요성	24
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	24
다. 향후 과제	26

III. 기업 측면의 주요 쟁점 / 29

1.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29
가. 논의의 필요성	29
나. 해외 사례	30
다. 대응방안	30
2.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31
가. 논의의 필요성	31
나. 해외 사례	32
다. 대응방안	34
3.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34
가. 논의의 필요성	34
나. 해외 사례	35
다. 대응방안	36
4. 데이터 독과점 규제	37
가. 논의의 필요성	37
나. 해외 사례	37
다. 대응방안	39

IV. 정부 측면의 주요 쟁점 / 41

1. 거버넌스	41
---------------	----

가. 논의의 필요성	41
나. 국내 현황	42
다. 주요국 현황	43
(1) 미국	43
(2) 영국	45
(3) 프랑스	47
(4) 일본	48
(5) 중국	48
(6) 러시아	49
라. 대응방안	50
2. 거래 기반 조성	51
가. 논의의 필요성	51
나. 국내 현황	52
다. 주요국 현황	53
라. 대응방안	57

V. 나가며 / 59

□ 참고문헌 / 63

표 차례

[표 1] 데이터산업 시장 직접매출 규모	3
[표 2] 데이터서비스 시장 직접매출 규모	4
[표 3]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현황	23
[표 4] 저작권 공정이용 관련 주요국 입법·정책 현황	33
[표 5] 공익데이터 관련 주요국 입법·정책 현황	36
[표 6] 데이터 독과점 규제 관련 주요국 입법·정책 현황	39
[표 7] 주요국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50
[표 8] 주요국 데이터 거래 기반 현황	57

그림 차례

[그림 1] 데이터 경제의 가치창출 체계	5
[그림 2] 데이터 경제 주체별 주요 쟁점	6
[그림 3] 일본 정보은행 서비스 구조	21

I. 들어가며

-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 (Data Economy)’가 부상하고 있음
 -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은 2011년 David Newman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음
 - 위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의 용어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아닌) ‘데이터’ 경제가 새로운 시대의 경쟁우위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음¹⁾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경제’를 제조업체, 연구자, 인프라 제공자 등이 데이터에 접근·활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생태계라고 하였음²⁾
 - 데이터로부터 일상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 데이터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³⁾
 -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분석되면서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딥러닝 등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어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음
 - 나아가 데이터 집적으로 형성된 경쟁력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장

1) David Newman,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2019. 3.
 2) European Commission,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 1.
 3) European Political Strategy Centre, “Enter the Data Economy”, 2017. 1.

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음

- 시장분석기관 IDC는 전 세계 데이터 시장에 대하여 2018년 1,660억 달러에서 2022년 2,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데이터량은 2016년 16ZB⁴⁾에서 2025년 180ZB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에 따라 주요국은 데이터 확보, 활용 확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및 입법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발표한 ‘디지털 전략’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가치에 기반한 데이터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데이터 경제가 중소기업자와 개인에게도 공정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은 2016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활용 정책을 본격 시행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도 데이터의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하여 데이터 관련 기술력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9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야 기술력은 미국 대비 16.6%의 기술수준 격차가 있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⁵⁾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4) 제타바이트(Zettabyte)는 10^{21} 바이트를 의미함

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8년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2019. 7. 60-61면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의 순위는 2018년 63개국 중 31위였고 2019년에는 40위를 기록하였음⁶⁾

- 다만, 2020년에는 해당 항목의 순위가 15위로 상승하였는데,⁷⁾ 전체 디지털 경쟁력이 8위인 점에 비추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국내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분석 제공’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조 8,693억 원으로 추산되고, ‘직접매출’^{*}은 9조 2,094억 원으로 추산됨⁸⁾

* ‘데이터 직접매출’이란 데이터와 직접 관련 있는 매출로서, 광고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 솔루션 제품 판매 등의 매출을 제외한 시장규모를 의미함

[표 1] 데이터산업 시장 직접매출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	증감률 17-18년	연평균 성장률 17-19(예상)
데이터솔루션	16,457	18,617	20,409	13.1%	11.4%
데이터구축/컨설팅	30,847	37,009	38,971	20.0%	12.4%
데이터서비스	18,339	30,102	32,714	64.1%	33.6%
합계	65,642	85,728	92,094	30.6%	33.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주요 결과 요약」, 2019. 12.

- 전체 데이터 관련 산업 중 ‘데이터서비스’ 시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제공,

6) IMD,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8”, 2018. 6. pp.104-105;

IMD,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 2019. 9. pp.104-106

7) IMD,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2020. 10. pp.106-107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주요 결과 요약」, 2019. 12.

데이터 거래, 분석 결과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이용료·광고료 등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며, 2019년 기준 데이터산업 전체의 약 36%의 비중임

- ‘데이터서비스’는 △ 기상 정보, 특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 △ 데이터를 중개·판매하거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거래’, △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연계·가공하여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제공’으로 분류됨
- 이 중 2019년 기준 ‘데이터 거래’의 직접매출은 3,915억 원으로서 전체 데이터 산업 중 3.95%(데이터서비스 중 11.97%)이고, ‘데이터 분석 제공’의 직접매출은 3,932억 원으로서 3.97%(데이터서비스 중 12%)임
-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 데이터서비스 시장 직접매출 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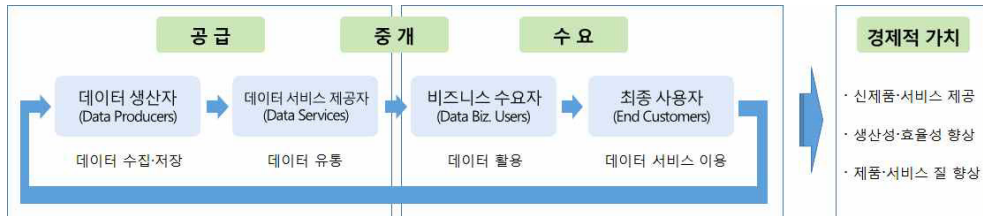
중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
데이터 거래	2,713	3,796	3,915
정보제공	12,747	22,673	24,867
데이터 분석 제공	2,878	3,63	3,932
데이터서비스 합계	18,339	30,102	32,71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주요 결과 요약」, 2019. 12.

- 이 글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 각 측면에서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데이터 경제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기계·프로세스에서 데이터

가 생성되고, 기업이 그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며, 최종적으로 개인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순환적 가치창출 체계를 이루고 있음

[그림 1] 데이터 경제의 가치창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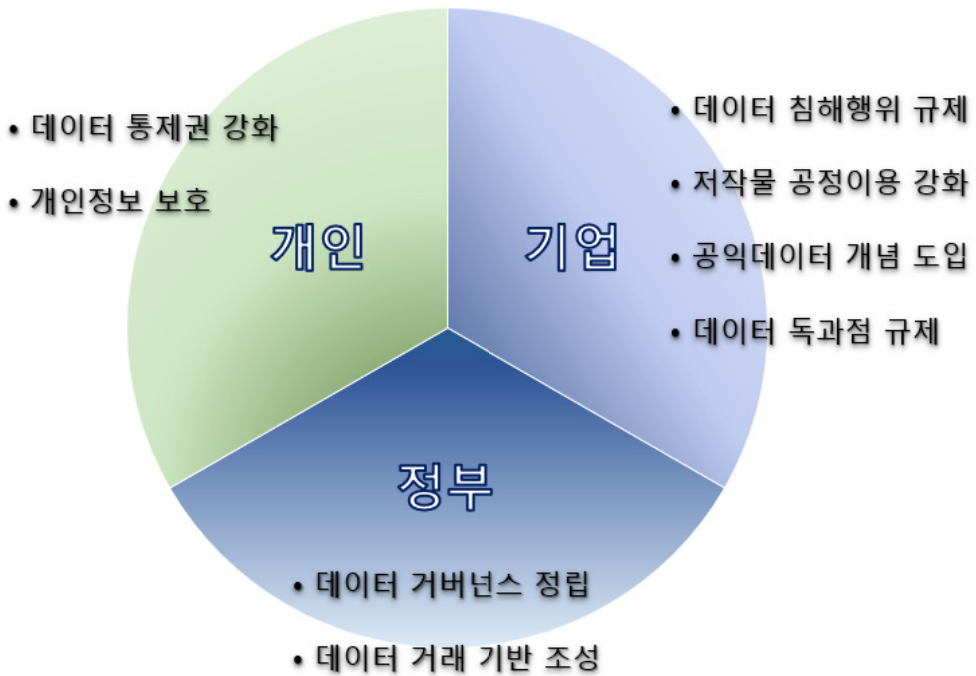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6. 2면;
원문은 European Political Strategy Centre(2017), 2면

-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는 데이터의 공급자이면서 수요자가 되며, 정부는 조정자로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태계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끼침)
- 이 글에서는 각 데이터 경제 주체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쟁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개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을 환원하고 신뢰를 부여하는 법제 현안으로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다루었음
 - 기업 측면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공공적 성격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법제 현안으로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데이터 독과점 규제를 다루었음

9) 김덕현, 「데이터 경제의 범위와 추진전략 고찰」, 『월간 SW 중심사회』 제74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8월호, 27-28면; 최윤희,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2019. 10. 26-28면

- 정부 측면에서 데이터 거래·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음

[그림 2] 데이터 경제 주체별 주요 쟁점



자료 : 자체 작성

II. 개인 측면의 주요 쟁점

1.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가. 논의의 필요성

-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요소임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거래·활용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얻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하여 사업자 간의 교환 및 재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본인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정보와 자원 간에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면 정보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신뢰가 확보될 때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이 가능함¹⁰⁾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발표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의 잠재력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음¹¹⁾

10) 정용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KISDI Premium Report』, 2017. 6. 19-20면

11)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2020. 2. 19. p.10

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

(1) 개요

-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명확하게 정의된 사유재산권은 자원 배분에 효율적이며,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음¹²⁾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산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적정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³⁾
 - 만약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환원과 기업의 데이터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함
 -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임을 전제하고 있고 동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민법」상 데이터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데이터가 ‘물건’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함

12) 이승훈, 「자유, 사적 소유, 경쟁 - 시장경제의 자원배분」, 『경제학연구』 제65집 제1호, 2017. 1.

13) 이상용,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거래법」, 『KISDI AI Outlook』 2020년 봄호, 2020. 5.

(2) 국내 현황

- 국내에서 데이터를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는 입법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음
 - 위와 같은 입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데이터가 자본·노동과 같은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경쟁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함¹⁴⁾
 - 우리나라 제20대 국회에서 데이터의 개념을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고 데이터 거래를 전형계약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¹⁵⁾
 - ◆ 위 법안은 ‘물건’을 “전기나 데이터 등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로 정의하여 기존의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외에 데이터 등 관리 가능한 무체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음
 -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행법으로도 데이터 관련 권리가 일정 부분 보호되며 배타적 지배가 어려운 데이터에 대하여 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유체물에 부착된 데이터는 보호될 수 있으며, 유체물과 분리된 데이터 자체도 영업비밀, 저작권 등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음¹⁶⁾

14)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2019. 4. 233-235면; 다만 이 논문에서도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물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67, 2019. 11. 18.

16)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12. 227-230면

- ◆ 아울러 사람의 감정·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함
 - 또한 특별히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접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배제성도 없어 점유권 및 이에 기초한 유치권·질권 등의 물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함¹⁷⁾
-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에 담겨진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에 데이터가 입력·보관될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데이터로 볼 수도 있어,¹⁸⁾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경우 그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블록체인·가상자산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① 경합성, ② 배제성, ③ 존립성을 갖고 있어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 현행 「민법」의 해석상 물건으로 포섭될 수 있고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음¹⁹⁾
 - 가상자산의 보유자를 소유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석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입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²⁰⁾

17) 이동진(2018) 223-224면

18)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90호, 2020. 3. 111-112면

19) 백대열(2020) 132-138면

20)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2019. 12. 138면

-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상속, 보관위탁, 탈취 등의 사례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함

(3) 해외 현황

- 일반적인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미국·EU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²¹⁾
 - 유럽의 다수학자나 실무가들은 데이터를 새로운 물권적 독점권으로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에서도 물권적 재산권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블록체인의 가상자산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옹호하며 이를 물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설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메릴랜드 주(州)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민사물수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²²⁾
 - 독일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에 한정된 것으로 평가되나, 입법론에 있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²³⁾
 - 일본에서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같은 가상재산을 물건으로 보아 물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²⁴⁾

21) 박준석,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 88-95면

22) 백대열(2020) 120-123면

23) 백대열(2020) 123-124면

24) 백대열(2020) 124-126면

- 한편, 도쿄재방재판소는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도산 절차에서 비트코인은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배타적 지배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환취권이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²⁵⁾
- 중국은 2017년 민법총칙을 개정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인터넷가상재산을 민법상 물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음
- 다만 ‘인터넷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²⁶⁾

(4) 대응 방안

-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으로 보고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상속 등의 경우에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음
- 최근 국회에서 “법률 또는 기술에 의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²⁷⁾ 국회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민법」상 물건은 ‘점유’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데이터 점유’ 개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25) 홍은표(2019) 130면

26) 정차호·이승현,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2018. 3. 154-156면

27)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99, 2020. 11. 2.

- 「민법」상 물건에는 점유 개념에 기반을 둔 담보물권이 적용될 수 있고 선의취득, 취득시효 등의 제도 역시 점유의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점유가 어떤 행위·상황을 말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저장매체에 대한 점유를 데이터의 점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²⁸⁾
- 블록체인·가상자산 기반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점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²⁹⁾와 준점유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³⁰⁾가 있음
- 「민법」 체계에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에서 소유권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다.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1) 개요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말하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MyData)’는 각종 기관 및 기업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인 개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데이터를 포함하는 물건의 개념 변경 및 데이터 계약 신설> 김세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867호))」, 2020. 3. 17면

29) 백대열(2020) 138-143면

30) 홍은표(2019) 133-134면

이터를 확인·관리·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말함

-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됨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동의 또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열람권을 통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
 - ◆ 다만,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권리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행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

(2) 국내 현황

- 개인정보 이동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함)상 전송요구권으로 도입되었음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2021년 2월 시행 예정임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송요구 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함

- 다만, 위 권리에 근거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³¹⁾
 -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게 고유 업무 외에 부수 업무(정보 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등), 겸영 업무(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등까지도 영위할 수 있게 하였음
 - 그러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신용정보 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확대할 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를 긍정하는 측에서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높이면 정보주체가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에 종속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권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함³²⁾
 -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난이도가 있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히려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고,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³³⁾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

31) 이진규,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다」, 『KISA Report』 2020년 제9호, 2020. 9.

32) 손경호 외, 『데이터 이동권 도입 방안 연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12. 114-115면

33) 손경호 외(2019) 116-117면

고 있음³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이 행정기관 등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음³⁵⁾
- 「데이터 기본법안」은 개인인 데이터주체가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본인, 본인데이터관리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담고 있음³⁶⁾

(3) 해외 현황

-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임
- GDPR 제20조(개인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는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처리자(컨트롤러³⁷⁾)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 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은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서 ① 처리가

34)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69, 2020. 7. 29.

35) 김용관의원 대표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33, 2020. 10. 28.

36)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6182, 2020. 12. 8.

37) GDPR의 컨트롤러(controller)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이고, ②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됨

-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함
 - 또한, EU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며 컨트롤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맥락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³⁸⁾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서 현행 개인정보 이동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³⁹⁾
- 사물인터넷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 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paces)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립적 중개인(neutral broker)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한다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규칙을 담은 법안(Data Governance Act) 초안을 공개하였음⁴⁰⁾

3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2020. 5. 147면; EU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2017. 4. pp.3-4

39)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제97호, 2020. 6. 217면; 위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2020) p.10

40)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proposal-regulation-european-data-governance-data-governance-act> 최종 방문일 2020. 12. 14.>; Regulation on data governance – Questions and Answers

- 중립적인 ‘데이터 중개인(data intermediaries)’을 도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거래하며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 일본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일본은 2016년 12월 시행한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에서 데이터의 유통·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가 정보시스템 규격 정비 및 호환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¹⁾

(4) 대응 방안

-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책 시행 경과를 보면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103 최종 방문일 2020. 12. 14.>

IAPP 기사, “Proposal for an EU Data Governance Act — a first analysis”, 2020. 12. 10.

<<https://iapp.org/news/a/proposal-for-an-eu-data-governance-act-a-first-analysis/> 최종 방문일 2020. 12. 14.>

- 41)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2조(개인의 참여하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민관데이터의 적절한 활용) 국가는 개인에 관한 민관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쟁적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 보호에 배려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개인에 관한 민관데이터를 해당 개인의 참여하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 확보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민관데이터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스스로 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 확보, 업무의 재검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 국가는 다양한 분야의 횡단적인 민관데이터 활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사업자의 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 모든 데이터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인한 장단점을 아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서 전송요구권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모든 데이터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 산업별 데이터 표준화 필요 여부,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영향,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 등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임⁴²⁾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³⁾

라. 정보은행 사례

(1) 개요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방안으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일정한 기관에 위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이 생산하는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측정이 어렵고 데이터 거래에 있어 협상력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 대규모로 수집된 데이터는 상당한 가치를 창출

42)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017. 9. 227-228면

43) 조영은·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76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0.

할 수 있어 개인의 수익 환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

(2) 국내 현황

- 우리나라 경기도는 2020년 2월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시행하였음⁴⁴⁾
- 이에 대하여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오너십이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현실적 권리로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가 있음⁴⁵⁾
- 한편, 데이터 활용 시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안전성 확보, 데이터 가치 산정 및 거래 방법, 환원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3) 해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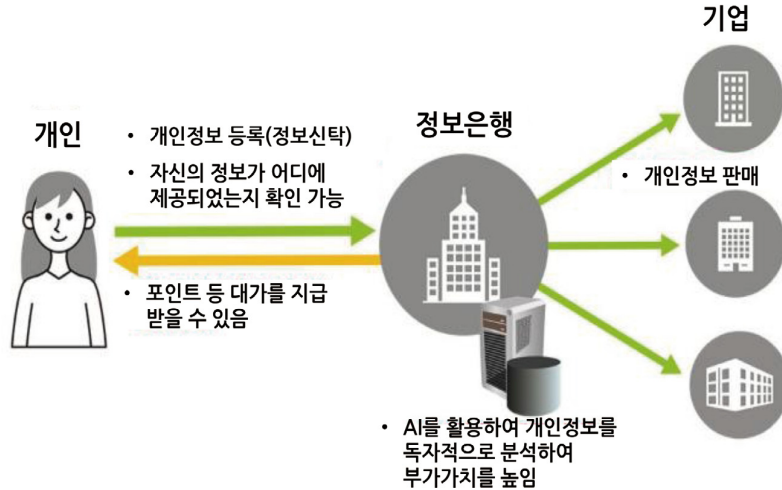
- 일본은 정보은행이 개인정보를 위탁·관리하고 그 수익을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임
- 정보은행 모델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은행에 제공·위탁하고, 정보은행은 이를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⁴⁶⁾)로 관리하며 정보제공 타당성 판단 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는 방식임

44) 연합뉴스 기사, “경기도,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수익 사용자에게 첫 배당”, 2020. 2.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0162900061> 최종 방문일 2020. 12. 24.>

45)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0. 2. 20. 참고

46) Personal Data Store

[그림 3] 일본 정보은행 서비스 구조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KISDI AI TREND WATCH』, 2020. 5. 3면; 원문은 KDDI, “個人情報を管理する『情報銀行』とは? その仕組みや利用するメリットを解説”, 2020. 2. 18. <<https://time-space.kddi.com/ict-keywords/20200218/2845>>

- 일본 IT종합전략본부는 2016년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를 구성하여 정보은행 및 데이터거래시장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2조가 정책 추진의 간접적인 근거임
-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8년 6월 정보은행 사업자 자격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일본 IT단체연맹이 정보은행 인증 제도를 시작하였음⁴⁷⁾
- 일본 총무성은 2018년 6월 「정보신탁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 ver1.0」을

4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KISDI AI TREND WATCH』, 2020. 5. 3면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민간 자율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적격성, 정보 보안, 거버넌스체계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은행 사업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⁴⁸⁾

-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IT단체연맹은 2018년 12월부터 정보은행 인정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4월까지 5개의 사업자가 인정자격을 취득하였음⁴⁹⁾
 - ◆ 개인은 자신의 구매이력 정보나 자동차 운행정보, 전력이용 데이터, 건강정보 등을 IT단체연맹이 인정한 정보은행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쿠폰, 할인권, 디지털화폐, 포인트, 지역상품권, 개인 우대 서비스 등을 받는 구조임
 - ◆ 5개의 사업자는 미즈이스미토모신타은행(데이터 신타), 펠리카포켓 마케팅(지역 진흥 플랫폼), 제이스코어(AI신용등급평가), 중부 전력(지역형 정보은행), 데이터 싸인(패스핏 서비스, ID/PW 등 개인정보 보관)임
- 일본의 정보은행은 데이터 보유자와 사업자 간 거래와 중개를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 형성을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 이동성 권한이 미흡하고 개별적 동의에 기반을 두는 등 법적 한계를 가지며, 인센티브 미흡과 표준화 부족 등도 지적되고 있음⁵⁰⁾

(4) 대응 방안

- 활발한 데이터 거래·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해볼 수 있음

48)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정보은행 추진과 금융업계 동향」, 『주간 금융브리프』 제28권 제3호, 2019. 2.

4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4-7면

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8면

- 일본의 정보은행을 참고하여 시범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적절한 가치 산정 및 환원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3]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현황

국가명	주요 입법·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옹호하며 데이터 소유권을 물권법으로 규율하는데 반대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R에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 데이터 수집·거래·공유 촉진 역할을 하는 중립적인 ‘데이터 중개인’ 개념 도입 추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정보시스템 규격 정비 및 호환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정보은행 시범사업 추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가상재산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된다고 규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 • 경기도는 지역화폐 데이터 사용 데이터에 대하여 배당 시행

자료: 자체 작성

마. 소결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방안으로서 데이터 소유권 및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은행 사례를 정리하였음
-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권리에 기반을 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가. 논의의 필요성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에 균형이 필요함
- 상당수의 가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을 경우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반면,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여 침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유통·활용이 위축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비가 필요하며,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하고 충실한 보호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경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 ‘가명정보’ 도입, △ 동의 요건 완화, △ 개인정보 개념 정비, △ 법제 정비, △ 추진체계 일원화를 들 수 있음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정의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양립가능성(compatibility)’ 법리를 도입하였음
 -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였는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은 동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한 것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음
-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가명정보’ 도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으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분야의 데이터 분석·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향후 과제

- 데이터 이용과 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형사처벌 합리화, △ 동의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임
-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단순 과실에 의한 법률상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하여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⁵¹⁾
 - 이에 따라 부정한 목적 등 가벌성이 높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는 방안, 다른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비교하여 무거운 경우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행정적 규제 강화 방안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⁵²⁾
 - ◆ 민사적 구제 수단 강화 방안으로 단체소송 판결의 효력범위 확대, 중

51) 전용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2018. 8. 230-232면;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법체계의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5. 3. 45-47면 등 참조

52) 김민호 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 개정에 관한 제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9. 3. 34면,

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 현행법상 원칙적 사전 동의(opt-in) 제도는 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보주체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⁵³⁾
 - 현행 동의제도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동의의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전 동의로 인해 정보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함
 - 이에 따라 현행 opt-in 제도를 원칙적 사후 동의(opt-out)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동의받을 항목을 포괄하는 등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에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정보집합물 결합 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감사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현행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데, 가명정보 또는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다루는 민간 기관 등에 대하여도 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EU GDPR 제35조제3항에서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53) ZDNet 기사, “인터넷 이용약관 동의, 10명 중 7명 “안 보고 한다” - 인기협 동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다른 통제 수단 필요해”, 2020. 11. 23.

<<https://zdnet.co.kr/view/?no=20201123173633&from=pc> 최종 방문일 2020. 12. 14.>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⁵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⁵⁵⁾

- ◆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54)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해당 평가에 기반한 결정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민감정보 또는 유죄판결 및 형사범죄에 관한 대규모 처리정보, ③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 모니터링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55) 장시영,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0권 제14호, 2018. 8.

Ⅲ. 기업 측면의 주요 쟁점

1.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가. 논의의 필요성

-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상 법적 공백 우려가 있음
-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 II.1.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 현행 법제에서는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하여 그 성격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권리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법제 등을 통해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
 - ◆ 예를 들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는데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콘텐츠인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진 못한 데이터⁵⁶⁾에 대하여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⁵⁷⁾

56) 예를 들어, 창작성도 없고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지 않은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들 수 있음

나. 해외 사례

- 일본은 2018년 5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축적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였음
- 2018년 5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한정제공데이터’를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비밀로서 관리되는 것은 제외)”로 정의하고, 이를 절취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대응방안

-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노력과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을 참고하여,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축적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상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 조항인 제2조제1호카목,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 유사 제도와의 비교가 필요함
 - 아울러 이러한 권리를 도입할 경우 등록·공시 여부, 입증책임 등 절차상

57) 박준석(2019) 105-110면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제정안에서, 데이터 자산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⁵⁸⁾

2.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가. 논의의 필요성

- 저작물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됨
 -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분석⁵⁹⁾하거나 학습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음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저작물 이용이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 해석상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⁶⁰⁾

58)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안」 제12조, 의안번호 2106182, 2020. 12. 8.

59) 이를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함

60)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저작권』 2018년 여름호, 2018. 6. 64면

나. 해외 사례

- 미국은 데이터마이닝의 공정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상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참작해야할 요소를 명문화하였음
 - 그 요건은 1)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저작물의 양, 4) 침해적인 사용에 의한 시장에서의 영향임
- 2014년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사건에서 연방 제2항소법원은 저작물 전체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 및 전문 도서관들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2015년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사건에서 연방 제2항소법원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한 행위에 대하여, 도서검색 지원 및 시대별 단어사용 빈도/경향 조사 등과 같은 새로운 용도를 위한 것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⁶¹⁾
- EU는 2019년 4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19/790」에 따라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입법지침을 마련하였음⁶²⁾
- 위 지침 제3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은 학문적 연구 목적 또는 문화유산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데이터마이닝을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 등은 보안조치를 취한 후 저장할

61) 정상조(2018) 63-64면

62) 김성호·조경희·최창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07호, 국회도서관, 2019. 10. 4면

수 있고,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일본은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개정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그 저작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동법 제47조의4는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 시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 해석용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하여 타인을 위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⁶³⁾
- 개정 「저작권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정보 검색·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자는 공중예의 제공 또는 제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관하여 그 행위의 목적상 필요 한도에서 당해 행위에 수반하여 경한 이용 등을 할 수 있음⁶⁴⁾

[표 4] 저작권 공정이용 관련 주요국 입법·정책 현황

국가명	주요 입법·정책
미국	• 판례상 데이터마이닝의 공정이용 인정
EU	•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입법지침 마련
일본	• 데이터마이닝과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자료: 자체 작성

63) 김성호·조경희·최창수(2019) 6면

64) 신현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2. 16면

다. 대응방안

-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저작물인 데이터 활용 시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2항은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형태로 공정이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해석으로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요건을 형성해갈 수 있으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공정이용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원저작물에 대한 변형적 또는 비표현적 이용, 본래적·심미적 용도가 아닌 검색이나 문자인식 등의 경우로서 원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제정안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⁶⁵⁾

3.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가. 논의의 필요성

65)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안」 제13조, 의안번호 2106182, 2020. 12. 8.

-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고 함)에 따라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으나 민간데이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음

나. 해외 사례

- 프랑스는 2016년 10월 공공과 민간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경제를 촉진시키고자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이른바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하였음⁶⁶⁾
- 위 법률은 공공데이터와 구별되는 ‘공익데이터⁶⁷⁾’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데이터라도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 공개할 의무를 갖도록 하였음
 - 다만, 위 법률은 개방의 대상이 되는 공익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범주에 해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1조는 민간·공공을 포괄한 관민데이터에 대하여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공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66) 정관선,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외국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3호, 국회도서관, 2018. 4. 10년

67)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가운데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데이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Governance Act) 초안에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이타성(data altruism)’ 개념을 도입하였음⁶⁸⁾

- ‘데이터 이타성’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익을 위하여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설치도 제안하였음
- ◆ 이를테면, 지역 교통 향상을 위하여 모빌리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음

[표 5] 공익데이터 관련 주요국 입법·정책 현황

국가명	주요 입법·정책
EU	•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이타성’ 개념 도입 추진
프랑스	•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하면서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일본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성 강조

자료: 자체 작성

다. 대응방안

-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다만, 민간데이터의 개방은 기업의 소유권 및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

68)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Regulation on data governance - Questions and Answer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103> 최종 방문일 2020. 12. 14.>
IAPP 기사, “Proposal for an EU Data Governance Act — a first analysis”, 2020. 12. 10.
<<https://iapp.org/news/a/proposal-for-an-eu-data-governance-act-a-first-analysis/>> 최종 방문일 2020. 12. 14.>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개방할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⁶⁹⁾

4. 데이터 독과점 규제

가. 논의의 필요성

-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⁰⁾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기업자 간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하였음⁷¹⁾
 - 데이터에 관한 지배력이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음

나. 해외 사례

- 독일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용·결합 행위가 착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음⁷²⁾

69) 정관선(2018) 44면

70) 연합뉴스 기사,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기업 데이터 독점, 소비자 피해 우려"”, 2020. 8. 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080000002> 최종 방문일 2020. 12. 14.>

71) European Commission(2020) p.8

-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6년 3월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2월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처리 행위가 착취적 거래조건 강제 행위로서 독일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 문제가 된 행위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왓츠앱(What’s App)’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페이스북 계정에 연계시킨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페이스북 이용자 계정에 연계시킨 행위를 말함
 - 다만, 새로운 유형의 행위였던 만큼 문제된 행위의 종료를 명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 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하여 페이스북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8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효력 정지 결정을 하였음
- 연방카르텔청은 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에 상고하였고, 2020년 6월 23일 연방최고법원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였음
 - 연방최고법원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선택권의 상실은 단순히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이나 프라이버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착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사전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⁷³⁾

72) 이상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독일 페이스북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1호, 2020. 7.

- EU 집행위원회는 모니터링 기구인 Observatory of the Online Platforms Economy를 통해 데이터가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과,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영역 간에 발생한 데이터를 이용·공유하는 현황을 분석하겠다고 하였음⁷⁴⁾
- 아울러, 시장의 개방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사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Digital Services Act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표 6] 데이터 독과점 규제 관련 주요국 입법·정책 현황

국가명	주요 입법·정책
EU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을 사전규제하는 법안 추진
독일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집·이용·결합 행위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결

자료: 자체 작성

다. 대응방안

- 일부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율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경쟁법을 적용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지위 여부 및 경쟁제한성 판단 등이 문제됨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혹은 다면시장으로서 기존 시장 획정 방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워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⁷⁵⁾

73) European Commission(2020) pp.14-15

74) Observatory o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홈페이지
 <<https://platformobservatory.eu/> 최종 방문일 200. 12. 14.>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⁷⁶⁾
- 한편, 데이터가 여러 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독점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되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있음⁷⁷⁾
-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여부 및 다른 상품·서비스로의 지배력 전이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참고하여 경쟁법 외에 다른 법률로써 데이터 독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5) 홍대식·최요섭,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8권 제2호, 2018. 6. 197-198면

76) 이상윤(2020. 7.) 235-239면

77) 강준모, “데이터 종류에 따른 독점의 영향과 규제방안”,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20. 12. 71-73면

IV. 정부 측면의 주요 쟁점

1. 거버넌스

가. 논의의 필요성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데이터 구축·개방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데이터 경제는 IT 인프라, AI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제로서 시스템 차원의 경쟁이 특징이므로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⁷⁸⁾
 -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포괄한 국가 전체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의사 결정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음⁷⁹⁾
- 현재 데이터 관련 정부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선도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를 포함하여 국민과 밀접한 데이터를 수집·관리·공개·활용 등 통합관리하고 활성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책임질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⁸⁰⁾

78) 김준연,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형성과 우리의 고민」, 『월간 SW 중심사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1월호, 5면

79) 정용찬(2017) 13면

80)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거버넌스의 현안 및 쟁점」, 『정부디자인 ISSUE』 제5호, 2020. 9. 10면

나. 국내 현황

-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기능은 없음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행정적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공공데이터법은 관련 정책 수립,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⁸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데이터 생산·수집·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관 법률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2020년 12월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데이터 시책 마련 및 유통·활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국가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81) 위 법률 제14조는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데이터를 모두 다루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목적이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음

되었음

- 공공데이터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⁸²⁾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⁸³⁾

다. 주요국 현황

(1) 미국

- 미국은 연방 예산관리실과 과학기술정책실이 공공데이터 공개를 주도하고 있음
- 연방 예산관리실(OMB⁸⁴⁾과 연방 과학기술정책실(OSTP⁸⁵⁾) 주도하에 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가 진행되고 있음⁸⁶⁾
 - 예산관리실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정책실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있어 과학,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공공데이터는 웹사이트(www.data.gov)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총무청⁸⁷⁾에서 담당하고 있음

82)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64, 2020. 7. 3.

83)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6182, 2020. 12. 8.

8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85)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86) 이원태 외, 『지속가능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12. 30면

- 관계 법령으로서 1966년 공공데이터 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에 대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OPEN Government Data Act를 제정하였음
- 예산관리실은 2020년 1월 연방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및 자원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데이터 정책 위원회⁸⁸⁾’를 설립하였음⁸⁹⁾
 - ◆ 위 위원회는 예산관리실의 자체적인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연방정부의 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향후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데이터 준비와 같은 새로운 우선순위 조정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연방 최고데이터책임자 위원회(FCDOC⁹⁰⁾’는 연방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행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산관리실은 2020년 1월 각 부처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가 참여하는 위원회인 FCDOC를 신설하였음⁹¹⁾
 - ◆ 이는 2019년 1월 제정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관한 법률」⁹²⁾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데, 위 법률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음⁹³⁾

87)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88) Federal Data Policy Committee: FDPC

89) 한국행정연구원(2020) 20면

90) Federal Chief Data Officer Council

91) 미국 정부 홈페이지

<<https://strategy.data.gov/action-plan/#action-7-launch-a-federal-chief-data-officer-council> 최종 방문일 2020. 12. 14.>

92)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the Evidence Act

93)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174> 최종 방문일 2020. 12. 14.>

- FCDOC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 공공·민간 사용자의 의견 수렴, △ 데이터 활용·보호 관련 우수 사례 공유, △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행정상 활용 지원, △ 데이터 수집·활용 제고를 위한 신기술 발굴 및 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실 및 산하기관·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연방 과학기술정책실은 2012년 빅데이터 핵심 기술 확보, 사회 각 영역에 활용,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⁹⁴⁾’를 발표하였으며, 2016년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계획⁹⁵⁾’을 발표하였음⁹⁶⁾
 - 과학기술정책실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조정, 이니셔티브 목표 확인 등을 위해 빅데이터 협의체인 ‘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BDSSG⁹⁷⁾’을 구성하였음

(2) 영국

- 영국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⁹⁸⁾에서 데이터전략을 수립·주도하고 있으며, 내각사무국⁹⁹⁾ 산하 디지털서비스청(GDS)¹⁰⁰⁾에서 정부

94) Big Data R&D Initiative

95) 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96) 윤미영,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3호, 2013. 9. 32-35면

97) 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

98)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99) Cabinet Office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세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 기업혁신기술부(BIS)¹⁰¹⁾는 2012년 3월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였음¹⁰²⁾
 - 데이터 공개 여부 판단, 잠재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조언 제공, 공공정보 접근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접근방식 제공 등을 하였음
- 내각사무국은 2012년 6월 ‘오픈 데이터 백서¹⁰³⁾’를 발간하면서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데이터 개방 지침, 향후 개방·공개 데이터 목록 등을 정리하였음
 - 이에 기업혁신기술부를 비롯한 총 16개 부처는 2012년 6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오픈 데이터 전략¹⁰⁴⁾’을 발표하였음
 - ◆ 데이터 공유 플랫폼(data.gov.uk) 재정비를 통한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오픈 데이터 평가 방법 도입 등을 포함하였음
- 이후 DCMS에서 2017년 ‘UK Digital Strategy’를 수립하고 전담하면서 기존 BIS 산하 데이터 전략위원회의 기능이 DCMS로 이관되었음¹⁰⁵⁾
 - DCMS는 2020년 9월 ‘National Data Strategy’ 수립을 주도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기능하며 내각사무국과 연계하여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 한편, 데이터 전략의 세부 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각 사무처와 그 산하

100) 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

101)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 BIS

102) 윤미영(2013) 35-37면

103) Open Data White Paper

104) Open Data Strategy

105) 한국행정연구원(2020) 23-24면

GDS의 역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관리 커뮤니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사례 수집 및 지침 설정을 하고 있음
 - 데이터 표준 전략 수립, 데이터 책임자 지정, 데이터 원칙 개발, 정부통합 데이터 보고서의 권장 사항 구현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¹⁰⁶)는 공공과 산업계의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부처·지자체, 기업,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국 데이터연구센터를 지정하고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는 총리 산하 기구인 etalab(에탈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하고 있음¹⁰⁷
- etalab은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https://www.data.gouv.fr/fr/>)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인 ‘decree of October 30, 2019’¹⁰⁸를 법적 근거로 두고 있음

106)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약자로서 인구 조사를 비롯한 경제, 사회 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등재하고,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등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07) 프랑스 etalab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talab.gouv.fr/qui-sommes-nous> 최종 방문일 2020. 12. 14.>

108) 프랑스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9281619> 최종 방문일 2020. 12. 14.>

(4) 일본

- 일본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에 근거하여 2001년 설치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종합전략본부)를 통해 국가 ICT R&D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¹⁰⁹⁾
- 일본은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내각관방 산하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에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함¹¹⁰⁾
 -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는 빅데이터 활용 특별부회를 운영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 과제,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은 IT종합전략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은 2016년 12월 국가·지자체·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였음¹¹¹⁾
 - 위 법률에 근거하여 IT종합전략본부 산하에 ‘관민데이터활용추진 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입안과 중요 시책의 실시·추진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5) 중국

- 중국은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

10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과 일본의 ICT R&D 지원 체계 및 최근 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년 1호, 2015. 2. 15-16면

110) 윤미영(2013) 38-41면

111)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 성립”, 2017. 2.
<http://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CTS_SEQ=42543&AST_SEQ=159&ETC> 최종 방문일 2020. 12. 14.>

는 것으로 파악됨¹¹²⁾

- 국무원은 2016년 7월 ‘국가 과기혁신 13.5계획’에서 중대 프로젝트로 빅데이터 분야를 포함시켰음
 - 주요 내용으로 1) 빅데이터의 핵심적 공통기반기술 확보, 2) 데이터공유 표준 체계 및 교환 플랫폼 구축, 3) 대표적 공통 응용모델 및 기술 솔루션 개발, 4)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빅데이터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들 수 있음
- 공업정보화부는 2016년 7월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각 지방정부 또한 빅데이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총괄관리기구 설립,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공유·유통 등을 추진하고 있음

(6) 러시아

- 러시아 전략이니셔티브청(ASI¹¹³⁾)은 2017년 8월 디지털 전환 계획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민관 합동 비영리 조직 ‘디지털 경제’를 신설하였음¹¹⁴⁾
 - 위 조직에는 러시아의 대표적 디지털 기업인 안텍스, 메일랏루, 램블러 컨퍼니, 로스텔레콤 등이 참여하였음

112)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 빅데이터 지원 정책과 동향」, 『Issue Report』 3호, 2018. 11. 3-6면

113)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

114) 박정호 외,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2. 16-18면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7] 주요국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국가명	주요 입법·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예산관리실(OMB)과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공공데이터 공개 주도 • 과학기술정책실 및 산하기관·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정책 추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서 데이터전략 수립·주도 • 내각사무국 산하 디지털서비스청(GDS)에서 정부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세부활동 담당 •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는 공공과 산업계의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산하 기구인 etalab(에탈라브)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추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종합전략본부에서 국가 ICT R&D 정책 수립 •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내각관방 산하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에서 정보화 정책 추진 •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에 근거한 IT종합전략본부 산하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전략회의’에서 관민데이터 정책 입안 및 추진 담당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정보화부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추진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전략이니셔티브청(ASI)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민관 합동 비영리 조직 ‘디지털 경제’ 신설

자료: 자체 작성

라. 대응방안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성과 운영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해 보임
- 데이터 수요자 입장에서 데이터가 민간/공공 중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민간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정부는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묶어서 제시한 바 있음¹¹⁵⁾
- 다만, 기존에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처·기관과의 관계, 설립 형태, 역할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므로 별도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신설할 경우 기존 기관들과의 중복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경우 외청, 독립부처, 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여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 심의, 데이터 직접 수집 및 제공,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공공데이터의 경우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민간데이터의 경우 직접 수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당사자 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경우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거래 기반 조성

가. 논의의 필요성

115)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 12.

-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음¹¹⁶⁾
- 데이터 거래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수요자·공급자 파악이 어렵고 정보교환에 제약이 있으며, 데이터 가공·정제·중개 업체가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음

나. 국내 현황

-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거래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기업 간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음¹¹⁷⁾
- 한국거래소의 금융·정보기술 자회사 코스콤은 2020년 5월부터 금융데이터 거래를 위하여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¹¹⁸⁾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 중에 있음
- 민간 거래소인 KDX(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2019. 12. 설립되었으며,¹¹⁹⁾ 이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N클라우드플랫폼(네이버), OPENAPI포털/빅데이터허브(SK텔레콤), 오디피아(LGCNS), API스토어(KTH), BIGSIGHT(KT), 맵API스토어(다비오) 등이 있음

116) 민대홍·오정숙, 『ICT기반 신사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10. 96-97면

117)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 <<https://www.datastore.or.kr/> 최종 방문일 2020. 12. 14.>

1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

119) 한국 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 <<https://kdx.kr/main> 최종 방문일 2020. 12. 14.>

- 분야별로 데이터를 생산·구축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유통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8월 기준으로 금융, 환경, 교통, 통신 등 10대 빅데이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10개 내외의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받고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0대 빅데이터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를 운영 중임¹²⁰⁾

다. 주요국 현황

- 미국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으로서 민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데이터 브로커 기업은 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공개정보·상업정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가공·분석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¹²¹⁾
- 미국 버몬트 주의회는 2018년 5월 「데이터 브로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의무사항을 부여하였음¹²²⁾
 - 데이터 브로커의 법적 개념, 등록의무사항, 침해사고 보고, 벌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책임도 부여하였음

120)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데이터지도 홈페이지 <<https://www.bigdata-map.kr/>> 최종 방문일 2020. 12. 14.>

121)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 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12. 90-91면

122) 민대홍·오정숙(2018) 133면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발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초안에서 데이터 중개인 개념 도입으로 데이터의 수집·거래·공유 촉진을 도모하였음
 - 위 II.1.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발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초안에서 중립적인 ‘데이터 중개인(data intermediaries)’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거래하며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주로 벤처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사물인터넷 분야의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¹²³⁾
 - ‘에브리센스재팬(EverySenseJapan)’은 2014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플랫폼은 순수 중개 기능만 제공하며 거래 가격은 판매자 및 구매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서 플랫폼에는 약 3,000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 ‘제이덱스(J-DEX)’는 2016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서 데이터 기술정보, 데이터 표준, 연계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거래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구이양시(市)에 글로벌 빅데이터 거래센터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상하이시에 데이터거래센터를 설립하였음
 - 중국정부의 출자로 구이양시는 2015년 4월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였고, 현재 2,000여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225개 기업이 판매회원으로서 빅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음¹²⁴⁾

123) 이재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주목하라」, 『통계의 창』 24호, 통계교육원, 2019. 12.

124)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100-102면

- 보유 데이터 중 공공데이터가 약 80% 수준으로 금융·유통 등 30개 분야 4,200여 종의 데이터를 제공 중임
- 상하이 데이터거래소는 중앙정부, 상하이시정부, 국유기업 등 국유자본(59%)과 민간자본(41%)이 공동출자하여 2016년 설립되었음¹²⁵⁾
 - 데이터의 수요·공급을 투명하게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중시하여 데이터 유통·거래 전용 자체 플랫폼(Chinadep)을 활용하고 온라인 매칭 및 청산·결제 위주로 데이터를 중개하고 있음
- 독일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국립 연구소 주도로 산업데이터의 안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¹²⁶⁾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가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는 산업데이터 아키텍처 개발 및 시범 테스트를 위한 플랫폼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평가하는 비영리 사용자 협회인 ‘산업데이터공간’이 2016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 ‘산업데이터공간’은 국립 연구소인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주도하고 있으며, 바이에르, 베링거 인겔하임, 지멘스, SAP, 폭스바겐, 알리안츠 보험, 델로이트, 독일기계제조설비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이는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 전략인 ‘인더스트리 4.0’ 플랫폼과 연관되어 추진되는데, ‘산업데이터공간’은 제조 산업을 넘어 금융, 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과 차이가 있음
- 덴마크 코펜하겐시(市)는 2015년 지역 기업, 클린테크¹²⁷⁾ 클러스터 조직

125) 이재진(2019)

126) 박정희 외, 「산업데이터플랫폼 확산 및 정책방향 - EU, 독일, 일본 사례 중심으로」, 『Issue Paper』 2018-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 10. 22-23면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 바 있음

- 코펜하겐시 170만 달러, 플랫폼 구축기업(일본 히타치) 250만 달러 공동 투자로 ‘코펜하겐 데이터 거래소(CDE)’를 설립하였고, 북유럽 도시와 스타트업 위주로 데이터를 거래·유통하였으며, 2019년 프로젝트 종료로 폐쇄되었음¹²⁸⁾
- 플랫폼을 통해 도시가 보유한 유의미한 공공·민간데이터(범죄통계, 에너지 소비량, 대기오염 등) 및 개인 데이터셋 개방·공유를 추진하였으나, 기업이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이고 직접거래를 선호하여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종합하면, 중국·덴마크 등은 정부·지자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지원, 민간 데이터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음

127) 클린테크(Clean Tech)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발생을 줄이는 새로운 환경기술(녹색기술)을 의미하며, 전기자동차·신재생 에너지 등이 주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음

128) 이재진, “데이터 거래소의 교훈과 데이터 거래시 고려할 법률요소”, 한국데이터법 정책학회, 2020. 12. 71-73면

[표 8] 주요국 데이터 거래 기반 현황

국가명	주요 입법·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브로커 시장 형성 • 버몬트 주의회는 「데이터 브로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의무사항 부여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수집·거래·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중립적인 ‘데이터 중개인’ 개념 도입 추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들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분야의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제공, 관련 컨설팅 지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에서 구이양시(市)에 글로벌 빅데이터 거래센터 설립, 지방정부차원에서 상하이시에 데이터거래센터 설립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연구소인 프라운호퍼연구소 주도로 설립된 협회인 ‘산업데이터공간’에서 산업데이터의 안정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 클린테크 클러스터 조직 등과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 거래소 구축·운영 후 종료

자료: 자체 작성

라. 대응방안

-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 간 연결성 및 개방성을 확대하고, 데이터 결합 촉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와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소 불편화되어 있어 데이터 구매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플랫폼 상호 간에 데이터가 쉽게 검색되고 간이한 절차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결성과 개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철저한 데이터 가명화·익명화를 전제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음¹²⁹⁾
- 데이터 수집·거래·분석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경제 활동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제상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 쉽게 활용이 어려움
 - 미국은 민간의 데이터 중개인(broker)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유럽은 법률상 중립적이고 비영리적인 데이터 중개인(intermediaries)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중개 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에 대하여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데이터 관련 제정법안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⁰⁾

129) 정준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34-35면

130)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6182, 2020. 12. 8.

V. 나가며

- 이 글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법제도적 쟁점들을 개인·기업·정부 각 경제 주체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개인 측면의 법적 쟁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다루었음
 -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데이터의 개방·활용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방안으로서 △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인정, △ 개인정보 이동권의 점진적 확대 및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적 보장, △ 정보은행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으로서 △ 형사처벌 합리화, △ 동의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를 제안하였음
- 기업 측면의 법적 쟁점으로서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의 보호, 데이터의 공공적 이용 확대 및 공정성 강화를 다루었음
 -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축적한 경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저작물인 데이터 활용 시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완화를 위하여 데이터 독점 현황 및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경쟁법 또는 다른 법률로써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정부 측면의 법적 쟁점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을 다루었음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제시하였음
 -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 확대 및 데이터 결합 촉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거래·분석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를 제안하였음
- 산업·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첨예한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정당한 이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 또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신이 축적한 데이터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할 때 안심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이처럼 각 주체를 데이터 경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신뢰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익 배분 등 데이터 경제 참여자들 간에 참여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이 다수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쟁점별로 데이터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 논문 등]

- 강준모, “데이터 종류에 따른 독점의 영향과 규제방안”,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20. 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주요 결과 요약』, 2019. 12.
-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6.
- _____, 『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 12.
-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0. 2. 2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데이터를 포함하는 물건의 개념 변경 및 데이터 계약 신설> 김세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867호))』, 2020. 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 5. 11.
- 김덕현, 『데이터 경제의 범위와 추진전략 고찰』, 『월간 SW 중심사회』 제74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8월호
- 김민호 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 개정에 관한 제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9. 3.
- 김성호·조경희·최창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07호, 국회도서관, 2019. 10.
- 김준연,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형성과 우리의 고민』, 『월간 SW 중심사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1월호
- 민대홍·오정숙, 『ICT기반 신사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10.

- 박정호 외,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전략지역심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2.
- 박정희 외, 『산업데이터플랫폼 확산 및 정책방향 - EU, 독일, 일본 사례 중심으로』, 『Issue Paper』 2018-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 10.
- 박준석,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 1.
-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2017. 9.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2020. 5.
-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90호, 2020. 3.
-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 성립”, 2017. 2.
- 손경호 외, 『데이터 이동권 도입 방안 연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12.
- 신현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2.
- 윤미영,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3호, 2013. 9.
-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12.
- 이상용,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거래법』, 『KISDI AI Outlook』 2020년 봄, 2020. 5.
- 이상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독일 페이스북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1호, 2020. 7.
- _____,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제97호, 2020. 6.
-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법체계의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5. 3.
- 이승훈, 「자유, 사적 소유, 경쟁 - 시장경제의 자원배분」, 『경제학연구』 제65집 제1호, 2017. 1.
- 이원태 외, 『지속가능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12. 3
- 이재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주목하라」, 『통계의 창』 24호, 통계교육원, 2019. 12.
- _____, “데이터 거래소의 교훈과 데이터 거래시 고려할 법률요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20. 12.
- 이진규,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다」, 『KISA Report』 2020년 제9호, 2020. 9.
- 장시영,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0권 제14호, 2018. 8.
-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2018. 8.
- 정관선,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외국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3호, 국회도서관, 2018. 4.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과 일본의 ICT R&D 지원 체계 및 최근 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년 1호, 2015. 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8년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2019. 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KISDI AI TREND WATCH』, 2020. 5.

-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저작권』 2018년 여름호, 2018. 6.
- 정용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KISDI Premium Report』, 2017. 6.
- 정준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 정차호·이승현,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2018. 3.
- 조영은·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76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0.
-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2019. 4.
- 최윤희,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2019. 10.
-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정보은행 추진과 금융업계 동향」, 『주간 금융브리프』 제28권 제3호, 2019. 2.
-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거버넌스의 현안 및 쟁점」, 『정부디자인 ISSUE』 제5호, 2020. 9.
-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 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12.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 빅데이터 지원 정책과 동향」, 『Issue Report』 3호, 2018. 11.
- 홍대식·최요섭,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6.
-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제23권 제3

호, 2019. 12.

[국내 기사]

연합뉴스 기사, “경기도,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수익 사용자에게 첫 배당”, 2020.

2.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0162900061> 최종 방문일 2020. 12. 14.>

_____,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기업 데이터 독점, 소비자 피해 우려"”, 2020. 8. 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080000002> 최종 방문일 2020. 12. 14.>

ZDNet 기사, “인터넷 이용약관 동의, 10명 중 7명 "안 보고 한다" - 인기협 동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다른 통제 수단 필요해”, 2020. 11. 23. <<https://zdnet.co.kr/view/?no=20201123173633&from=pc> 최종 방문일 2020. 12. 14.>

[국내 홈페이지]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 <<https://www.datastore.or.kr/> 최종 방문일 2020. 12. 14.>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데이터지도 <<https://www.bigdata-map.kr/> 최종 방문일 2020. 12. 14.>

한국 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 <<https://kdx.kr/main> 최종 방문일 2020. 12. 14.>

[외국 보고서]

David Newman,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2019. 3.

EU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2017. 4.

European Commission,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 1.

_____,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2020. 2. 19.

European Political Strategy Centre, “Enter the Data Economy”, 2017. 1.

IMD,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8”, 2018. 6.

_____,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 2019. 9.

_____,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2020. 10.

[외국 기사]

IAPP 기사, “Proposal for an EU Data Governance Act – a first analysis”,
2020. 12. 10.

<<https://iapp.org/news/a/proposal-for-an-eu-data-governance-act-a-first-analysis/>
최종 방문일 2020. 12. 14.>

[외국 홈페이지]

미국 정부 홈페이지

<<https://strategy.data.gov/action-plan/#action-7-launch-a-federal-chief-data-officer-council>>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174>>

프랑스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9281619>>

프랑스 etalab 홈페이지 <<https://www.etalab.gouv.fr/qui-sommes-nous>>

KDDI, “個人情報を管理する『情報銀行』とは？

その仕組みや利用するメリットを解説”, 2020. 2. 18.

<<https://time-space.kddi.com/ict-keywords/20200218/2845>>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proposal-regulation-european-data-governance-data-governance-act> 최종 방문일 2020. 12. 14.>,

Regulation on data governance - Questions and Answer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103

최종 방문일 2020. 12. 14.>

Observatory o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홈페이지

<<https://platformobservatory.eu/> 최종 방문일 200. 12. 14.>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 03. 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 05. 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법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 06. 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 06. 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 07. 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 07. 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 08. 08.	조주은 최진응
제00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 09. 21.	허민숙
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 11. 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 11. 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 11. 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 12. 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 12. 10.	김태엽
제014호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2018. 12. 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 12. 13.	박선권
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 12. 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음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 12. 14.	김현정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 12. 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 12. 17.	허민숙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 12. 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 12. 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 12. 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 12. 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2018. 12. 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 12. 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 01. 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 09. 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 10. 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1. 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 11. 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 12. 10.	김진수
제0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 12. 16.	박재영
제0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2019. 12. 19.	김은진
제0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 12. 23.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제0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2. 24.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제0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9. 12. 26.	이혜경
제0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2019. 12. 26.	구세주
제0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9. 12. 27.	백상준
제0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9. 12. 27.	박명희
제040호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 12. 31.	김도희
제041호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9. 12. 31.	황현영
제042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19. 12. 31.	문은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43호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2019. 12. 31.	강지원 조영은
제044호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 05. 22.	허민숙
제045호	국회 안전진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0. 05. 30.	전진영
제046호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2020. 06. 24.	신동윤
제047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2020. 06. 30.	구세주
제048호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 06. 30.	김예성 하혜영
제049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0. 07. 10.	김창호
제050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07.	김예성
제051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020. 08. 13.	박선권
제052호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28.	김예경
제053호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2020. 09. 01.	허석재
제054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2020. 09. 01.	김종갑 허석재
제055호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07.	정준화
제056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18.	박혜림
제057호	한반도 주변 경계미확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2020. 09. 21.	정민정
제058호	상속세 미납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0. 10. 07.	장영환
제059호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 10. 08.	김종규
제060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2020. 11. 26.	-
제061호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2020. 12. 04.	허민숙
제062호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2020. 12. 21.	김진수
제063호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2020. 12. 23.	김봉주
제064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 12. 29.	박연수
제065호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2020. 12. 30.	장경석 송민경
제066호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2020. 12. 30.	박준환 김규호
제067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2020. 12. 30.	최진응
제068호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20. 12. 30.	전진영

입법 · 정책보고서 Vol. 제69호

발 간 일 2020년 12월 31일
발 행 김만흠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6788 · 471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609-14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정책보고서

주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NARS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6788. 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609-14
ISSN 2586-5668



국회입법조사처